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4378 손해배상(지)
원 고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변상결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욱
변 론 종 결 2026. 7. 22.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8. 20.부터 2026. 8.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 설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설계 구조 프로그램인 'D', 'E'(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등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2018. 8. 15.부터 2022. 6. 18.까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사용하였다.

다. 피고들은 2024. 2. 7.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사용하여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3고정634),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 C가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관하여 피고 C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1개당 소매가격인 3,500만 원에 복제, 사용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수인 3개를 곱한 금액으로 1억 5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갑 제4,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 전체 모듈의 라이선스 비용은 4,950만 원으로 책정된 사실, 원고는 2015. 11.경 거래처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특정 모듈(TS, Steel Detailing)에 대한 라이선스(License)와 그 유지보수를 3,333만 원에 견적을 제안한 사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약 1,100만 원(유지보수 제외)에서 약 2,9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이고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에게 필요한 모듈별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이 사건 프로



그럼의 크랙 버전을 통해 전체 모듈을 복제한 것이고 모든 모듈의 기능을 사용할 목적이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대체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오래된 버전의 사용료가 하락하게 되는데,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어떤 버전을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가격이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 당시의 가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인 3,500만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 1개에 대한 사용 허락이 있었다면 피고들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관련 기존 이용계약 체결 사례, 개별 모듈의 구성과 가격,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횟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저작물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8.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해린